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6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인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성준, 박승진, 송도호, 오금란,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전병주, 정준호, 최민규, 최재란, 허·훈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최근 명일동 등 시내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시가 보유한 ‘지반침하 안전 지도(우선정비구역도)’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상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비공개 상태에 있어 시민 전문가 언론이 위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확인하고 있음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 대응에 필수적인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 안전 확보, 사고 예방, 행정 신뢰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개정을 통해 시장이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예방 대응 역량을 강화 및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으로 하여금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안 제12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 침하 또는 공동 발생 예방 등)제4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